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및 휴대 물품 반입시 주의사항

- 필리핀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 물품을 반입하려다가 필리핀 세관에 많은 관세를 지불하거나 의료봉사 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사전 승인받지 못한 채 입국하여 물품 반입이 거부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및 휴대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여행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연락처(TEL) >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 +63-2-8856-9210
- 주세부대한민국분관 : +63-32-231-1516(~19)
- 필리핀 관세청
 - 대표전화 : +63-2-8705-6000
 - 홈페이지 : <https://customs.gov.ph>
 - 이메일 : boc.cares@customs.gov.ph
- 마닐라 국제공항(NAIA 1, 2, 3) 세관
 - custom help desk : +63-927-540-8091
 - 이메일 : carina.manansala@customs.gov.ph
- 세부 국제공항 세관 : +63-32-494-7000 (ext. 7543)
- 클락 국제공항 세관 : +63-45-499-0828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2023년 6월말 기준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주류	○ 2병 (단, 합계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담배	○ 2보루 또는 연초 50개피	
향수	○ 개인사용 용도 일정량의 향수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면세 금액은 총 합산 1만 페소이며, 1만 페소이상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은 반입시 관세 부과 원칙. -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하고 재출국시 반출하면 관세면제 가능.	
외국환신고	○ 필리핀 통화(Peso) 5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벌금 부과 및 형사 조치 가능. ○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시 외화반입신고서(Currencie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공항 관세청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 조치 가능.	
의약품	○ 의약품 반입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게 발급된 의사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함. ○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동·식물류	○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 계란, 조류, 과일 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받은 후 검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 필요 ○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반입불허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 도박용품, 중고 의류, 냅마, 상아 제품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 																	
반입제한 물품 및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table border="1" data-bbox="480 831 1182 1200" style="margin-left: 20px;"> <tbody> <tr> <td>살아있는 동물, 육류</td> <td>축산청(BAI)</td> </tr> <tr> <td>과일, 채소 기타 작물</td> <td>작물생산청(BPI)</td> </tr> <tr> <td>수산물</td> <td>해양수산청(BFAR)</td> </tr> <tr> <td>총기, 부품, 폭발물</td> <td>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td> </tr> <tr> <td>Tape, CD, DVD류</td> <td>광학매체위원회(OMB)</td> </tr> <tr> <td>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td> <td>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td> </tr> <tr> <td>희귀 생물</td> <td>환경자원부(DENR)</td> </tr> <tr> <td>의약품 기타류</td> <td>식품의약품청(BFAD)</td> </tr> </tbody> </table> ○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 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를 위해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총 합계가 10,000페소 초과하는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신고서에 물품 양과 총액수를 적어 신고하여야 함. 	살아있는 동물, 육류	축산청(BAI)	과일, 채소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BPI)	수산물	해양수산청(BFAR)	총기, 부품, 폭발물	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	Tape, CD, DVD류	광학매체위원회(OMB)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희귀 생물	환경자원부(DENR)	의약품 기타류	식품의약품청(BFAD)	
살아있는 동물, 육류	축산청(BAI)																	
과일, 채소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BPI)																	
수산물	해양수산청(BFAR)																	
총기, 부품, 폭발물	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																	
Tape, CD, DVD류	광학매체위원회(OMB)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희귀 생물	환경자원부(DENR)																	
의약품 기타류	식품의약품청(BFAD)																	